

2020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

「산림보호법」 제45조의8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20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.

2020. 6. 30.

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



1. 고 시 명 : 2020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
2. 대 상 지 :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산2-1번지(1개소)
3. 지정사유 :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
4. 고 시 일 : 2020. 6. 30.
5.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(산림보호법 제45조의10)
 -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가.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「사방사업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
 - 나.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「사방사업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
6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원녹지과(☎051-519-454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내역 1부
2.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구역 도면 1부
3.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. 끝.